

예산총칙

제 1 조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375,810,702	424,297,546
일반회계	5,930,753,291	296,537,000
일반회계	5,930,753,291	296,537,000
특별회계	2,445,057,411	127,760,546
공기업특별회계	634,492,331	37,239,54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4,584,466	27,458,44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2,635,472	6,979,1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27,272,393	2,802,000
기타특별회계	1,810,565,080	90,521,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697,416	1,284,000
경륜사업특별회계	42,787,147	2,139,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5,678,991	22,783,000
교통사업특별회계	67,908,170	3,395,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8,252,583	6,912,000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	20,000,000	1,000,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46,890,941	42,344,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15,000	250,000
기반시설특별회계	246,000	12,000
유료도로특별회계	42,054,695	2,102,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32,711,942	6,635,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7,884,595	894,000
재정비축진특별회계	15,437,600	771,00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443,26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320,880,000천원, 특별회계 160,000,000천원이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